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98

발의연월일: 2024. 7. 8.

발 의 자:이정문・이학영・홍기원

박 정・김남근・민형배

이연희 · 김용만 · 서영석

서미화 • 이인영 • 강훈식

박수현 • 문진석 의원

(14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 함.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죄질과 책임을 달리하므로, 형사제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제공요구행위로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보제공요구를 하게 된 사유나 행위의 태양, 요구한 거래정보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금융거래정보의 제

공요구 행위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여 위헌 결정을 하였음(2020헌가5, 2022. 2. 24. 결정).

이에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해당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위헌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법률 제 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			
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			
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			
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u>누설하여</u>	<u>누</u> 설하여서는		
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	<u>아니 된다</u>		
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			
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			
<u>는 아니 된다</u>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			
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